

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대면접촉이 많은 집배원의 보호와 집배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의 등기통상우편물의 비대면 배달근거 마련 및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로도 우편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「우편법」 개정(2019. 12. 10. 공포, 2020. 6. 11. 시행)됨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하여 일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등기우편 비대면 배달근거 마련 (안 제28조제2항 신설)

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대면접촉이 많은 집배원의 보호와 집배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등기통상우편의 비대면 배달 필요성 증가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본부장 고시를 통하여 등기우편 비대면 배달의 근거마련

나. 우편요금을 선납라벨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마련 (안 제106조의2 신설)

우편요금을 선납라벨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우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납라벨로 요금납부 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및 선납라벨의 종류 · 취급방법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부령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4. 10. ~ 4. 20.)

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수령사실의 확인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3장제7절(제106조의2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절 우편요금의 납부방법

제106조의2(요금등의 납부방법) ① 법 제20조제6호에 따라 우편요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을 구입하여 우편물 발송 시 우편물에 부착하는 방식(이하 “선납라벨”)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.

- ② 선납라벨의 종류 및 취급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 사실확인등) (생 략)	제28조(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 사실확인등) ① (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「 <u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 」 등 관련 법률에 따 라 정부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<u>우정사업본부장이 수령 사실의 확인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7절 우편요금의 납부방법</u>
<u><신 설></u>	<u>제106조의2(요금등의 납부방법)</u> ① 법 제20조제6호에 따라 우편 요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을 구입하여 우편물 발송 시 우편 물에 부착하는 방식(이하 “ <u>선납 라벨</u> ”)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. ② <u>선납라벨의 종류 및 취급방 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.</u>